

#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시·도·광역·초광역사업 통한 상생발전 유망 사업 발굴

진실태

## 1.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현황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은 광역경제권 계획을 수립한 직후인 2010년부터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 광역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다. 유형별로 시범공모사업의 형태로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미 2010년과 2011년 시·도별 공모사업에 대해 1,83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신규사업 5개를 추가하여 2012년 공모사업에 대해 1,48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의 경우 시·도의 공모사업과 지역발전위원회의 2차 평가를 거친 후, 관계부처가 연계협력도, 타당성, 유사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우수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2010년 자치단체가 기초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면서 총 339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였으며 두 차례 평가와 관계부처 검토를 통해 최종 14개 사업을 선정하여 이 중 12개 사업에 대해 2011년부터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시·도간 또는 광역권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적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의 추진을 통해 연계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도간 연계협력사업에 주점을 두고 있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광특계정 |
|--------|-------|-------|-------|------|
| 기초생활권  | 1,838 | 1,838 | 1,488 |      |
| 광역경제권  |       |       |       |      |
| 초광역개발권 |       |       |       |      |
| 합 계    | 1,838 | 1,838 | 1,488 |      |

## 2. 연계협력사업의 추진과정의 평가

정부에서 광역적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역간 연계협력을 강조하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행정구역 단위의 투자가 관행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성과는 미흡한 수준이다. 첫째, 계획수립 마감, 연계협력 사업의 평가, 예산 반영 등을 염두에 두고 짧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다보니 즉흥적으로 급조된(ad hoc basis) 계획이 많아 발굴건수에 비해 사업계획의 충실도와 실현가능성 등이 매우 취약한 편이다. 협력에 의한 지역발전은 시간을 정해두고 마감하는 사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계획수립 단계에 임박해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경우, 협의조정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합의형성에 이르지 못 채, 단순한 구상 또는 제안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둘째, 연계협력사업의 선정과정이 중앙 위주의 하향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그 지역이나 권역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고유한 사업이 발굴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역이나 권역의 자발적인 노력이나 지역주민의 참여도 부족하다. 셋째,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족으로 연계협력의 추진을 위한 동기부여가 미흡한 형편이다.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별도의 투자재원이 부족하고 인센티브도 미약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 발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계협력사업 예산이 자치단체 단독사업 예산과 동일한 계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원한도 내에서 굳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연계협력사업을 기획하기 보다는 단독사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와 같이 기존 사업예산을 활용할 경우 당해 사업목적에 구속받아 다양한 사업의 발굴과 지원이 제도적으로 곤란하다. 넷째, 군특법(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계협력사업의 발굴과 재원분담 등을 책임지고 있는 광역위원회의 추진역량이 부족하고, 광역위원회와 시도간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연계협력사업 발굴이나 협의·조정 등의 역할 수행이 미약하며, 부처마다 사업추진방식도 서로 달라 자치단체에서 다수 부처에 관련된 융복합형 연계협력사업의 발굴 및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이다.

## Ⅲ. 연계협력사업의 활성화방안

원칙적으로 협력은 당사자간 자율적 의사에 기초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율적 협력을 유도하여 합의 형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즉,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생활패턴은 광역화된 지가 오래이며, 지역 그리고 국가간 경제 및 교류활동의 범위도 행정구역을 벗어난지 오래입니다. 5+2 광역경제권은 현 정부의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정책기조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발전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 전국을 7개로 나눈 광역경제권을 육성하여 국토균형발전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수도권은 그 중 하나의 광역경제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산업 육성과 시·도간 연계 협력 추진 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09년 10월 출범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지역내 교수·경제전문가 등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내에는 60인의 분야별 전문